

수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소비재 정부, 수출 고도화 정책에 역량 집중

[이주의 초점]

K-뷰티·푸드 수출 급성장

"2030년 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목표" (4p)

[위클리 뉴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 세계 6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농축산물·항공기부품 등

한·미 상호관세 면제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7p)

[오피니언]

"판결 기다리다 놓친다"

미 IEEPA 상호관세 환급 받으려면 (13p)

‘익명·비대면’ 인도 FA 제도가

한국 기업 통관·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6p)

‘미국 이어 2위’ 인도, ‘반덤핑 조사’

초기 대응이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21p)

[품목분류 동향]

굴착기용 유압식 해머의 품목분류 (43p)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1월 5일(통권 제2161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K-뷰티·푸드 수출 급성장, 정부 수출 인프라
고도화 “2030년 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목표”

07 Weekly News**오피니언**

- 13** 시선, 미국통관
앤드류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판결 기다리다 놓친다” 미 IEEPA 상호관세 환급
받으려면
- 16** 시선, 인도통관
최영훈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익명·비대면’ FA 제도가 한국 기업의
통관·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윤승현 Ernst&Young(Ernst&Young) India 관세사
“미국 이어 2위” 인도, ‘반덤핑 조사’ 초기 대응이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관세행정실무해설

- 33** 관세행정안내
화학반응을 수행한 물품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 41** 질의응답사례
베이커리류의 HS Code

품목분류동향

- 43** 품목분류해설
굴착기용 유압식 해머의 품목분류
- 50** 세번 바로잡기
로즈힙 페이스트

K-뷰티·푸드 수출 급성장, 정부 수출 인프라 고도화 “2030년 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목표”

소비재가 바꾸는 수출 지형 … 물류·인증·통관 경쟁력 강화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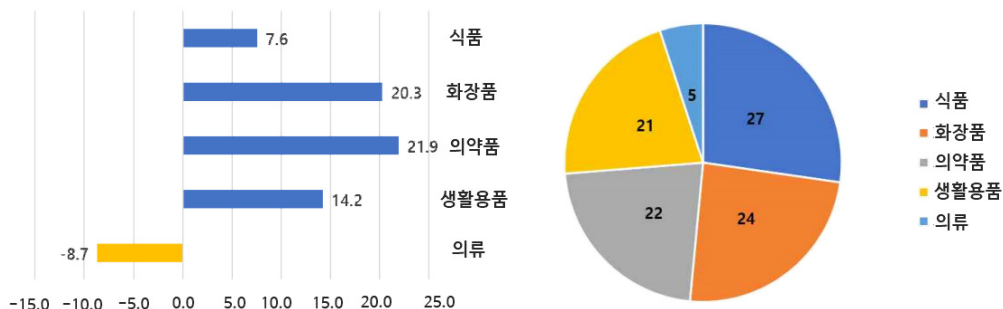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기록한 성과로, 한국이 수출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K-뷰티와 푸드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이번 수출실적의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루려면 K-뷰티를 비롯한 소비재 수출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수출구조 재편하는 핵심 동력 K-뷰티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서 뜻밖의 인물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올리브영 매장에서 K-뷰티 제품을 구매한 뒤 자신의 SNS에 ‘South Korea skincare finds’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 사진을 게시한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를 앞다퉀 보도하면서, 단순한 인증샷을 넘어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K-뷰티와 K-푸드는 이제 한류의 영향을 받은 반짝 수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 수출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K-컬처 확산과 맞물려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수출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소비재를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2024년 5대 소비재 수출 증가율(좌)·품목별 비중(우) ●



출처 :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5대 소비재(농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수출액이 42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24년도 실적인 427억달러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11.4%, 농수산식품은 6.5% 증가하며 한류 연관 소비재 수출이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화장품은 2년 연속, 농수산식품은 5년 연속 수출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32.2% 증가하는 동안 화장품 수출은 292.5%, 농수산물 수출은 72.6% 늘어나 성장 속도 면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보였다. 더 나아가 식품과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3%, 91%에 달하면서, 대기업과 중간재 중심이던 한국 수출구조가 중소기업·소비재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발표 “물류 인프라 구축”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4일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케팅·물류·인증 등 소비재 수출의 핵심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K-소비재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해외 소비자 특화 유통·물류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해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한다. 언어·결제 장벽과 반품 부담으로 역직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해 번역, 결제, 해외 서비스센터 운영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자체 글로벌몰 구축이 어려운 기업은 역직구 대행 플랫폼과 연계해 해외 결제와 배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글로벌 홍보물 제작과 인플루언서 연계 마케팅, 외국인 역직구 고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실제 통관·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물류 인프라도 소비재 특성에 맞춰 고도화된다. 해외 주요 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교환·반품, 재포장·재출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2026년까지 322개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단순 보관·배송을 넘어 보다 정교한 물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화장품은 온도 관리와 품질 유지가 중요해 콜드체인을 포함한 풀필먼트형 물류 시스템이 필수”라며, “이 같은 인프라를 토대로 해외 소비자 대응과 브랜드 신뢰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출국 다변화로 규제 대응 관건 “해외 인증·지재권·품목분류 등 수출애로 해소”

수출 시장이 중국 중심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중동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규제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등 갈수록 세계 각국의 장벽은 두터워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외 인증과 라벨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인증·표기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표준원을 중심으로 1월 ‘소비재 인증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상반기에는 AI 기반 해외 인증·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규제 정보와 인증 절차를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할랄 전문무역상사 지정도 병행한다.

관세·통관 지원도 두드러진다. 지난 12월 31일 관세청은 화장품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성분과 용도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달라지는 화장품 특성을 고려해, 완제품·부자재·원료물질에 이르기까지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아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울인원 제품은 제3401호(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에 분류되고 있다. 울인원 제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 치약, 면도용 크림과 폼(FOR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제3401호(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에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 품목분류 오류 사례 : 마스크팩 ●

6.28

마스크팩
Nonwoven articles, impregnated with cosmetics

HSK 2025

당초결정 3307.90-4000

결정세율

신규세율

양허 6.5%

양허 6.5%

1. 물품설명

- ◆ 부직포 원단을 얼굴 전체에 덮을 수 있도록 눈, 입 부분에 구멍을 뚫어 채단하여 화장품 성분(산안장술가주술, 정제수, 글리세린, 나이아신아마이드, 에탄올, 메틸프로판디올, 알란토인 등)을 함침시킨 마스크팩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매/pack)
- ◆ 용도 : 마스크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항료”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품용 성분용 조제 탈취제항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3. 유의사항

- ◆ 제33류 주 제4호 해당여부 검토

4. 제3307호에서 “조제항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상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 펠트(felt) 부직포, 등용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5)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4호에서 “제3307호에서 ‘조제항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상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 펠트(felt) 부직포, 등용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을 침투 도포한 부직포의 마스크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4000호에 분류함

출처 : 관세청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뚫어 나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K-소비재 수출 확대를 한국 수출 역사에서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2년 연속 7,000억달러 수출 달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다변화와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1월 1일부터 시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발급 요건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거래에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관세조사 등에 의한 반복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 구분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 시 예외적 발급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정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미발급 사유

1.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2.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 2) 관세조사 등 결과 통지에도 같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 반복
 - 3)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 4)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동일 오류 반복 행위에 대한 적용 기간은 직전 관세조사 등으로 한정했다. 적용 범위의 경우, 세번(HS) 적용 오류는 '동일(유사) 물품'으로, 금융비용·수수료 등의 과세가격 누락 오류는 '동일 거래조건'으로 정하는 등 분야별 구분표를 마련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동일 오류 반복에 대한 질의회신 및 불복 결정 사례 등을 예시로 추가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지침의 적용 시점을 올해 1월 1일 이후 가격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세관의 미발급 처분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도 강화했다.

| 하구현 기자 |

폐기물 수입보증 대폭 완화 … 폐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커피찌꺼기 수입 시 수입보증 보험료 '0원'

폐기물 수입보증 면제 품목을 2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수입보증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니켈, 코발트 등 핵심 폐자원의 수입 유효기간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중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올해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입보증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평균 수입보증보험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기존 폐지와 고철 등 2종에서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을 더해 10종으로 늘어난다.

작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은 104만톤으로 이중 폐지와 고철이 86만톤을 차지했다. 기후부는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총 1억 7,000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직접 효과에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절감 효과 등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폐기물의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 부과와 징수 및 청문 권한을 유역환경청으로 위임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 환경부 홈페이지(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한국, 세계 6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우리 수출이 2025년 사상 첫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자동차·선박 등이 강세를 보이고 화장품·농수산물 등 수출 품목 다변화로 힘을 보탠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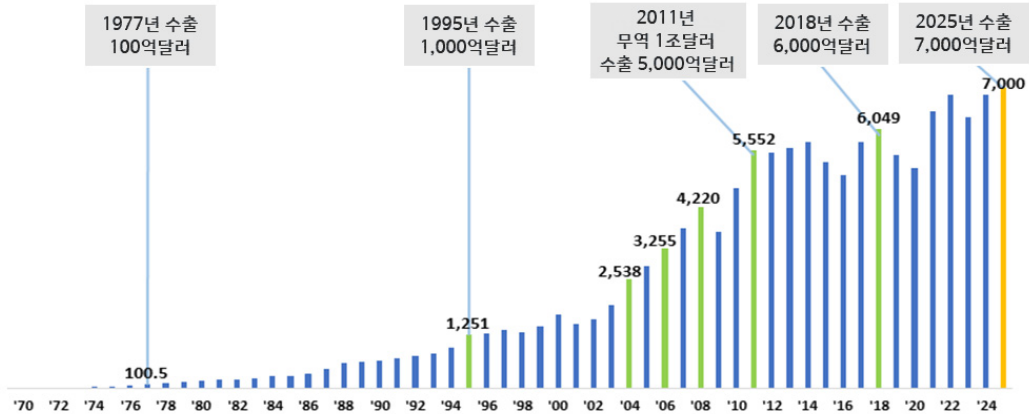
기존 중국과 미국 중심이던 수출 시장도 유럽연합(E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 다변화되고, 중소기업의 수출도 증가하며 수출 저변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작년 12월 29일(13시 3분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948년 1,900만달러의 최초 수출실적을 기록한 이후 77년 만인 2025년 우리 수출이 첫 7,000만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세계 6번째 기록이다.

올해 초 만 해도 대 내외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 회복,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 1970년 이후 한국의 수출 현황 ●



출처 : 관세청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 품목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수출 지역도 미·중 비중이 감소하고, ASEAN·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 신고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 투자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면서 이미 종전 역대 연간 최대 실적[2024년, 345억 7,000만달러(신고 기준)]을 경신하고 35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

| 하구현 기자 |

국내선 ‘의약외품’ 치약, 해외선 의약품·화장품으로 분류 … 식약처, 규제정보 제공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치약제가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전혀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혼란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2월 31일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신설하고, 첫 사례로 치약제에 관한 해외 주요국 규제 정보를 전자책(e-book) 형태로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의료제품 수출지원 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약제는 국내 의약품 가운데 생산 실적과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핵심 품목이다. 2024년 기준 생산 실적은 4,051억원으로 의약품 전체 생산액의 25.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 국가별 치약제 품목분류 현황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중국
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화장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자연보건제품 화장품	치약

국가별 품목분류 및 규제 차이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치약이 세정이나 미용 목적의 경구용 제품인 화장품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충치 예방이나 시린이 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할 경우 일반의약품(OTC(Over the Counter) 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성분, 표시 문구, 임상적 근거 제출 여부 등에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반면 EU에는 치약에 관한 단일 품목분류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 치약은 EU 화장품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성분 구성이나 효능 표시 내용에 따라 회원국 규제기관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자료에는 국가별 규제기관과 품목분류 체계, 인·허가 절차와 등록 시 제출 자료, 치약 표준제조기준(monograph), 제품 표시 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용 여부, 사후 관리 제도,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이 수록됐다. | 김성은 기자 |

올해 수입물품 과세자료 참고 ‘과세자료 제출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관세청은 12월 30일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납세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 조기 확인 및 세액 조정 위험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 시행됐다.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격신고서에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과세자료 우수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됐다. 또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했다.

관세청은 세관에 의한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해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농축산물·항공기부품 등 한·미 상호관세 면제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은 최근 미국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1월 13일 미국 측이 상호관세 제외 품목을 추가로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농축산물 229개 품목과 화학공업 소재 19개 품목을 연계해 총 248개 품목의 연계표가 수록됐다.

관세청은 “조미김·고춧가루·녹차·인스턴트커피 등이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돼 있어 K-푸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연계표도 함께 공개했다. 11월 14일부터 소급해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면제된다. 해당 품목번호 연계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 관세무역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새해부터 관세” 멕시코, 한국 등 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

멕시코정부가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현지매체 멕시코뉴스 데일리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동차·섬유·의류·철강·플라스틱·신발·가구·완구·알루미늄·유리 등 10여개 산업, 총 1,463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관세율은 품목별로 5~35%이지만, 일부 철강 제품과 중국·일부 아시아 국가산 차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계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멕시코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현지 업계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매체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이 2026년 예정된 미국·캐나다와의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FTA) 재검토를 앞두고 통상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멕시코는 한국의 최대 중남미 교역국인 만큼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미국 통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관세 부담이 대폭 상승해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및 품목분류와 관련된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세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이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글로벌통관연구소장인 앤드류 박(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가 미국 수입통관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판결 기다리다 놓친다” 미 IEEPA 상호관세 환급 받으려면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앤드류 박 |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최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미국이 갑자기 부과한 IEEPA 상호관세,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지금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 대법원 판결이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실제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IEEPA(국제경제비상권한법)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2025년 미국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일부 국가와 품목에 대해 기존 관세와는 별도로 추가 관세, 이른바 펜타닐 관세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는 형식적으로는 미국 수입자가 납부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가격 인하, 추가 할인, 리베이트 등의 방식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적지 않다.



IEEPA에 따른 관세가 문제가 된 이유는 미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2025년 8월, 미국 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관세 부과 법의 법적 근거가 잘못 해석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이 사안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관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향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환급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불확실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기업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오는가”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권한이나 통상 정책처럼 헌법적·정책적 의미가 큰 사안은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절차 진행 상황과 과거 유사 사건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대체로 2026년 상반기 전후, 빠르면 봄, 늦어도 여름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며, 대법원 내부 사정이나 쟁점 정리 과정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IEEPA 관련 소송 대상 관세 조치 ●

국별 관세 IEEPA	펜타닐 관세 (마약·국경관세)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IEEPA 관세 소송 대상
	상호관세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 부과 57개국에 최대 50%까지 차등 관세 부과	
품목별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목재 등	품목별 관세 10~50%	품목별 관세는 소송 영향 없음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미국 관세 제도에서는 법원 판결보다 세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환급 여부를 좌우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제기나 권리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업계에서는 “판결보다 기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2025년 12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일부 수입업체들이 관세 확정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확정된 관세라도 다시 계산해 환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급의 길 자체는 열려 있으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기업에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미국 수입기업들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행정 절차상 이의 제기를 해 두거나 필요 시 법원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관세 금액이 클수록 나중에 대비해 권리를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이는 비용과 전략이 필요한 선택이므로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직접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우리 거래에 IEEPA 추가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미국 바이어의 통관 서류에 관련 관세 코드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가격 인하나 추가 할인 등의 형태로 관세 부담이 사실상 수출기업에 전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수입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자”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 환급 기회를 놓칠 위험이 크다.

정리하면 핵심은 분명하다. IEEPA 관세 환급은 가능성의 문제이지, 자동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판결은 2026년에 나올 수 있으나, 준비는 그 이전에 끝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으로서는 미국 수입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미국 수입자 및 무역·통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랍니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 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 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관세관에게 인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통관 문제를 들어봤다.

'익명·비대면' FA 제도가 한국 기업의 통관·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인도 비대면 심사제도(Faceless Assessment)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



최영훈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1. 비대면 심사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조

우리나라와 인도 통관 행정제도 중 차이점 하나가 바로 비대면 심사제도(Faceless Assessment, 이하 'FA 제도')다. 이 제도는 물품 검사와 서류 심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입항지 세관에서 물품 검사를 수행하고, 내륙지 세관에서 서류 심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신고서를 배분하는 절차와 심사 후 보완통보, 접수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인도 관세청은 이를 단순한 업무 분산이 아니라 통관 절차 전반을 혁신하는 통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 비준 이후, 통관 절차 간소화, 부패 가능성 차단, 심사 기준 일원화를 암묵적으로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인도 관세청(CBIC)은 기존의 지역별·직원별로 상이하던 심사 관행을 개선하고, 통관 과정에서의 대면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FA 제도를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확대돼 인도 세관 행정의 표준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2. FA 제도 운영 원칙과 절차

1) 비대면 통관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칙

인도 관세청의 FA 제도는 통관 혁신의 핵심 규범을 'Face-less, Contact-less, Paper-less'의 세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통관 과정에서의 대면 접촉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 투명성·심사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다.

① Face-less(익명성 기반 심사 구조) : FA 제도는 세관 직원과 신고인 간의 직접 접촉을 전면 차단한다. 심사관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배정되고, 신고인은 담당 심사관 정보를 인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익명성 기반 배정체계는 사적 접촉·임의적 심사 개입·비공식 청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며, 통관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핵심 장치다.

② Contact-less(디지털 기반 심사 자동화) : 통관 절차의 모든 단계는 웹 기반 환경에서 운영된다. 요건 확인, 보완 요구, 담보 설정, 승인 통보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심사 과정은 자동화 알고리즘에 의해 진행된다. 이로써 물리적 대면 접촉은 제거되고, 절차 소요 시간 및 인력 개입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됐다.

③ Paper-less(전자문서 표준화) : 인도 관세청은 종이 서류 제출 관행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체계를 표준 절차로 확립했다. 전자수입신고서(Bill of Entry), E-gate pass, 수출입전자문서시스템(E-sanchit) 플랫폼을 통한 문서 제출·저장·검증이 통관의 표준이 됐으며, 사후심사 또는 검증 단계에서도 문서 진위 확인이 즉시 가능해졌다. 이는 자료 검증의 오류 가능성과 행정 지연 요인을 동시에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조직 구조 및 기능 분리 체계

FA 제도는 심사 방식의 변경을 넘어 행정 조직 자체를 기능별로 분할·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통관 프로세스는 본질적 기능에 따라 심사(Assessment)와 현장 집행(Customs Clearance)으로 이원화됐으며, 가상 조직과 물리적 세관 조직이 분담 운영하는 체제다. 수입자는 관세사를 통해 인도 세관 전자게이트웨이(ICE-GATE)로 수입신고(Bill of Entry)를 하게 된다. 인도 관세청은 RMS(Risk Management System)에 의거, 검사를 선별하고, 관련 HS별로 내륙지 세관에 배부하게 된다. 검사 건은 입항지 세관에서 검사 후 처리되고, 내륙지 세관에 배부된 것은 담당자가 접수 처리하게 된다. 담당자는 서류심사 후, 합리적인 의심에 있는 건은 질의(Query)를 전산망으로 통해 보내고, 신고한 관세사는 이를 접수해 질의에 적합한 자료를 작성해 전송하고, 세관담당자는 심사 후 처리를 하게 된다. 내륙지 세관 담당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입항지 세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가 종료된 건은 관세 등 제세 납부 후 반출절차를 거치게 된다. FA 제도는 다음 네 부서가 업무를 나눠 긴밀한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① 중앙심사센터(NAC) : NAC(National Assessment Center)는 11개 가상 조직으로 구성된 심사

기준 총괄기구로, 품목분류 지침, 세율 적용 기준, 심사 배정 원칙을 국가 단위에서 통합 관리한다. 또한, 항만 간 정보 흐름·리스크 분석·배정 구조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 운영의 핵심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② FAG(비대면 심사부서) : FAG(Faceless Assessment Group)는 전자신고서를 기반으로 서류심사를 전담하며, 검사 의뢰(1st·2nd Check), 보완 통지(Query) 발송을 수행한다. 인도 관세청은 2021년 Query 발송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해 반복 요구로 인한 심사 지연과 민원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이다.

③ PAG(항만 검사부서) : PAG(Port Assessment Group)는 현장에서 검사·반출 수리를 담당하는 물리적 조직이다. FAG가 심사 결정을 내리면, PAG는 이에 따라 물품 확인 및 검사 집행을 수행한다.

④ TSK(지원센터) : TSK(Turant Suvidha Kendras)는 담보·보증금 처리, 은행보증(B/G) 및 징수 관련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즉, 심사 권한은 가상 조직이, 검사 집행을 항만 조직이, 재정·보증 절차는 TSK가 담당하는 다층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는 기존 단일 세관 기능 수행 방식에서 업무 단위 분리·전문화 체계로 전환된 대표 사례다.

3. 애로 및 개선 사항

1) 애로사항

비대면 심사제도 도입은 세관 담당자와 수입자 간 대면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기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던 임의적 판단과 사전 소통의 비공식 경로를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전산 기반의 일방적인 통지 방식이 표준화되면서,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는 수입업자의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심사 통지, 보완 요청, 질의회신 등이 모두 시스템 내 알림 방식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무 현장에서는 내륙지 심사(FAG)와 현장 처리(PAG·TSK) 간 소통 채널 부재로 인해 실제로 대응 기한 도과, 추가 소명 기회 상실, 통관 지연이 발생했다.

또한 FA 제도의 핵심 구조인 심사 기능과 현장 통관 기능의 완전 분리는 오히려 특정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유발했다. 예컨대 FAG가 심사를 적시에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TSK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본 확인, 보증금·담보 처리, 후속 등록 절차가 지연될 경우 최종 수리는 즉시 이뤄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반출 지연과 물류 정체가 현실화됐다.

아울러 심사 기준의 일원화를 목표로 설계된 제도임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지역별 FAG 배정에 따른 판정 편차가 재발했다. 동일 HS 품목이 상이한 FAG에 배정되면서, 심사 논리 및 요구자료 범위가 서로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복합기계류처럼 품목분류가 복잡하거나, 평가에 많은 검토가 소요되는 품목의 경우 잠정 심사(Provisional Assessment) 상태가 장기화돼 기업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익명성 기반 심사 특성상 분쟁이 발생하면 심사 담당자 특정 및 책임 주체 확인이 어려워, 조정·이의 제기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노출됐다.

2) 개선 사항

제도 도입 초기에는 휴직·전보 직원에게 자동 배정된 건이 장기간 미처리되는 사례나 인수인계 미비로 심사 중단 상태가 자주 발생했다. 신고자 또한 통관 진행 중인 세관과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병목과 운영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 관세청은 2020년 말부터 둘째 주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토요일을 FAG 근무일로 지정했다. 이 조치를 통해 심사 적체가 일부 해소됐다.

또한 반복적 보완 요구와 심사관별 질의 문구가 상이한 문제는 통관 과정에서 통일절차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NAC 차원에서 질의 항목의 정비, 불필요 질의 삭제, 표준 템플릿 문구의 적용을 권고했다.

2023년 5월 31일에는 기존 11개 중앙심사센터(NAC)를 8개로 통합해, 품목별 심사권한을 단일화하고 중복 심사 기능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 동일 품목에 대한 심사·관세평가 기준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2025년에는 잠정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4. 제도 도입 효과

FA 제도 도입은 통관 소요시간 단축과 행정 부패 차단이라는 두 축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한 업무절차 변경을 넘어, 인도 관세행정 체계의 구조적 혁신을 견인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항공화물의 80% 이상, 해상화물의 70% 이상이 과거 대비 신속 통관을 달성했다. 종전 3~4일에 달하던 통관 처리기간은 평균 48시간 이내로 단축됐으며, 세관 단계 처리 역시 6시간 이내 완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FA 제도의 핵심은 심사 담당자와 민원인의 직접 접촉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이다. 이는 인도 조세행정이 장기간 직면해온 부패 리스크, 심사 자의성, 사전 접촉 등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조치였다. 담당직원의 익명성 보장과 질의·보완요구의 전산화는 모디 정부가 표방한 신뢰 기반 행정과 투명한 세정 체계 정책기조에도 부합된다.

아울러 FA 제도의 전면 시행은 단순한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넘어, 인도 무역환경 디지털 전환의 모범적인 운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수출입 행정 체계의 국제 표준화, Doing Business 지표 개선 등 국제 경쟁력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통관 인프라 확립은 인도의 통관체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5. 유의사항

FA 제도가 시행된 지 대략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통관애로는 보고되지 않았다. 비대면 심사 체제에서 세관 담당자와의 직접 소통이 차단되고 통관

진행 상황이 전적으로 전산 통지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수입자는 심사과정에서 알림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질의(Query)에 대한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FA 체계 특성상 최초 제출된 서류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주서, 규격서, 인증서, 카탈로그 등 품목분류 및 가격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업무 편차를 줄이는 유일한 사전 조치이기도 하다. e-Sanchit상 업로드 서류와 세관신고서(Bill of Entry)가 정확하게 연계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FAG 단계 심사가 신속히 종료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등 FTA 특혜 확인 서류는 현장 창구(TSK)에서 최종 처리되므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원격 심사와 현장 진행절차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품목분류 이견 등이 발생할 경우 잠정심사(Provisional Assessment)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 납부와 담보 제공이 확정 전까지 자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A 제도가 정착되면서 한국 수출기업은 단순한 통관 절차 변화의 차원을 넘어, 선적 일정, 수입자 공급망 계획(SCM, Supply Chain Management), 통관 전반에 걸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FA 제도의 운영 방식과 실무상 요구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 준비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내 최대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세 이슈를 짚어봤다.

“미국 이어 2위” 인도, ‘반덤핑 조사’ 초기 대응이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윤 승 현 |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1. 서론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Trade Remed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25년 12월 기준, 한국산 물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 조치 건수를 보면, 인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현황(2025.12.10. 기준)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총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16	7	0	0	2	2	18	9	27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	기타	합계
3	13	6	0	0	1	4	27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특히, 인도에서 무역구제 대상으로 주로 삼고 있는 품목들은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로, 이러한 무역구제 조치는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인도에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한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정부는 2022년 10월경 전기아연도금 강판(Electro Galvanized Steel)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 조치의 대상국 범위에 한국이 포함됐다. 전기아연도금 강판은 냉장고 외판 등 백색가전의 핵심 소재다.

만약 해당 원재료를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원재료 조달단가가 상승하고, 그 결과 인도에서 백색가전을 제조하는 한국 기업(예 :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생산원가가 상승해 인도 현지 기업 또는 제3국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거나 인도로 수출할 때는 단순히 기본 관세율 또는 FTA 혜택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무역구제 조사 동향,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동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예기치 않은 추가관세 부담이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인도 반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반덤핑(Anti-Dumping)은 특정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덤핑차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덤핑 관세의 법적 근거는 WTO 반덤핑 협정이며, 인도 또한 WTO 회원국으로서 인도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 제9A조에 해당 내용을 수용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다.

인도에서 반덤핑 조사 및 부과는 WTO 반덤핑 협정에 근거해 진행되며, 절차와 요건도 해당 협정의 틀을 따르고 있다. 인도에서 반덤핑 조사는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에서 진행하며, DGTR 조사 결과 권고의견에 따라 인도 재무부 산하 조세국(Department of Revenue)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인도 국내산업이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 인도 상공부 산하 DGTR이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개시를 통지한다.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자, 해외 수출자, 인도 수입자, 인도 국내산업, 정부기관은 일정 기간 내 이해관계자로 등록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 진행의 첫 단계로, 이해관계자들은 조사대상물품(PUC, Product Under Consideration) 및 그 세부 유형(PCN, Product Control Number)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취급하는 특정 품목이 기술 사양, 최종 용도, 생산 공정 등에서 반덤핑 조사 타겟과 실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품목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조사당국에 요청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은 DGTR 질의서(Questionnaire) 양식에 따라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거래 구조, 원가 구조, 판매 구조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인도 DGTR은 제출된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덤핑 여부, 국내산업 피해,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Oral Hearing)를 개최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청취한다. 또한, 제출된 답변서 및 증빙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검증 또는 현장실사 형식으로 검증(Verification)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청회 및 검증 절차를 거친 뒤, DGTR은 최종판정(Final Findings)을 통해 부과해야 할 반덤핑 관세의 수준과 형식을 권고한다. 이후 인도 재무부는 DGTR의 최종판정을 바탕으로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고 부과 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통상 5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GTR은 제출된 답변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판단을 내리고, 예비판정(Preliminary Findings)을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 재무부 산하 조세국에서는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인도 반덤핑 조사 절차 ●



출처 : 저자 작성, 편집 : 주간 관세무역정보

3. 반덤핑 조사 참여의 중요성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수출자·제조자는 회사별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세율(individual duty rate)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조사

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조사당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best information available)’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고, 실제 거래 구조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높은 잔여(residual) 세율 또는 기타(all others)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동일한 품목을 수출하더라도 조사 참여 여부와 소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덤핑 관세는 한 번 부과되면 통상 5년간 유지되고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장기간 원가·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적시에 제시하지 못하면 인도 항 수출 및 인도 생산법인의 원가구조가 장기간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쟁사 또는 경쟁국 대비 더 낮은 개별세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인도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고 동일한 원가 구조에서도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상, 이러한 세율 격차는 단기 손익을 넘어 중장기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시사점

인도는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한국 기업은 사전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추가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훼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은 인도 진출 또는 인도 수출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관련 무역구제 조치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재료·중간재 중심으로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완제품 수출기업뿐 아니라 인도 현지 생산법인도 공급망 전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품목별·원산지별 무역구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인도 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무역구제 조사가 개시됐다면,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록, 질의서 답변, 자료 검증 대응 등 주요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부 원가·판매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 시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학반응을 수행한 물품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중 FTA
질문	역내산 황화스트론튬(제2830.90호)에 역외산 탄산나트륨(제2836.20호)을 첨가해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분리·추출)한 탄산스트론튬(제2836.92호)은 한·중 FTA 원산지 기준(CTH)을 충족하나요?
답변	탄산나트륨이 촉매(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품에 잔존하지 않아 간접재료로 간주해 원산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건에서 탄산스트론튬은 황화스트론튬과 탄산나트륨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므로 탄산나트륨은 촉매가 아니고 원재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생산제품과 역외산 재료인 탄산나트륨의 호가 동일하므로 원산지 기준을 미충족합니다. 다만, 호 변경에 관계없이 화학반응을 인정하고 있는 한·미 FTA 등의 경우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FTA 원산지 판정

1) 개요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중 화학물품은 원산지 판정 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외에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부 협정에서만 화학반응, 정제, 혼합배합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협정에서는 간접재료(중립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용된 간접재료에 대해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직접재료인지 간접재료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시된 질문에서 쟁점이 되는 역외산 탄산나트륨(제2836.20호)에 대한 간접재료 여부, 화학반응 등 가공공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2) 간접재료

FTA 원산지 특례기준은 공통기준 외에 다양한 예외와 보완적 규정으로, 실제 무역 현장에서 원산지 판정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특례규정은 각 협정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정별 규정에 근거한 정확한 활용이 필요하다.

FTA 원산지 특례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원산지 판정에 유연성을 확보해 협정국 간 무역 및 생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원산지 판정에서 협정상 규정의 경직적인 적용과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실제 무역환경에 불합리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원산지 특례기준 중 하나인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중립재) 규정을 확인한다. 간접재료는 상품의 생산·검사 등의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협정에서는 중립재(Neutral Elements)라고 표현한다. 물품의 제조과정에 투입되며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재료들을 직접재료라고 부른다면, 물품의 제조과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연료, 공구, 소모품 등의 재료들은 최종적으로 물품에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재료, 즉 중립재로 이해할 수 있으며, FTA 원산지 결정 시 이러한 간접재료는 원칙적으로 재료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모용 또는 운송(수송)용 포장재료·용기 규정과 함께 원산지 판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들에 대한 규정으로, 각 규정에 부합하는 원재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중 FTA에서도 간접재료(중립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한·중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10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중립재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원산지 판정 시 간접재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접재료는 일반적으로 ‘재료’로 보지 않으며, 원산지 판정 대상 원재료목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시된 재료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해당 재료가 직접재료인지 간접재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간접재료의 정의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재료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규정도 예시적이다. 앞서 제시한 한·중 FTA의 중립재 규정에서도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 외에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지만,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됐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을 중립재로 인정하고 있다.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결합 여부에 따라 직접재료와 간접재료를 구분하나, 기업회계에서는 중요성 원칙에 따라 고가품은 직접재료, 저가품은 간접재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생산자가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협정의 구분기준과 회계상의 구분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비교해 간접재료 해당 여부를 판단해 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간단한 판단사항은 해당 원재료가 협정의 간접재료 예시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품의 원산지 판정에서는 해당 원재료가 촉매(catalyst), 용제(solvent)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정에서 규정하는 간접재료의 예시는 내용상 차이가 있으므로 협정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협정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간접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②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상품 등”으로 간접재료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때 협정별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촉매제와 용해제(catalysts and solvents)를 간접재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EU FTA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상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결국 소요되는 재료가 직접재료인지 간접재료인지에 대한 해석은 협정별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에서는 역내산 황화스트론튬(제2830.90호)에 역외산 탄산나트륨(제2836.20호)을 첨가해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분리·추출)한 탄산스트론튬(제2836.92호)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충족이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황화스트론튬(제2830.90호)은 역내산이며, 역외산이 사용되더라도 HS Code 4단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쟁점이 없다.

다만, 원재료로 역외산 탄산나트륨(제2836.20호)이 사용된다면 기본적으로 원산지 충족이 불가능하며, 역외산 탄산나트륨이 중립재(간접재료)에 해당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2) 중립재 해당 여부 및 유사 사례 제시

실무적으로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간접재료(중립재)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 보다는 일단 비원산지 원재료에 대한 HS Code 변경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 마련이다. 만약 비원산지 원재료에 대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거나 해당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사용된 역외산 탄산나트륨이 해당 방법으로서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기준으로 이뤄진 경우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 원산지 판정을 한다면 탄산스트론튬(제2836.92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또는 ②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 적용을 시도할 수 있고, 한·미 FTA는 PSR이 한·중 FTA와 동일하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이지만, 화학반응이나 정제 등 여러 가지 가공공정기준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는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을 선택할 수 없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며 완전생산기준은 물론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방법은 사용된 역외산 탄산나트륨(제2836.20호)을 원산지 특례기준상 중립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상품은 화학물품으로 촉매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탄산나트륨이 촉매(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품에 잔존하지 않아 간접재료로 간주해 원산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사례에서 탄산스트론튬은 황화스트론튬과 탄산나트륨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므로 탄산나트륨은 촉매가 아니고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한·중 FTA에서는 CTH를 통해서만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산나트륨이 중립재로

인정받을 수 없고, 원산지 판정 시 고려돼야 하며, 최소허용기준 등을 활용할 수 없다면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다.

간접재료(중립재)와 관련한 유사 사례를 보면, 일단 원산지 결정기준상 직접재료로 인정된다면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EU FTA 관련해 제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제75류, 제76류)에 대한 원산지는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EU FTA 원산지 규정 제10조(중립재)에 따라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해야 하며, 제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을 구성하므로 원산지 결정 시 고려(중립재로 인정되지 않음)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작성 시 활성화(최종 제품의 색깔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투입되며, 정제과정 후에는 모두 제거됨)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활성화의 경우 제조과정 등의 확인을 통해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재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BOM은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를 표시할 수 있는 자재명세서로서 간접재료도 자재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내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생산 사실을 반영해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직접재료와의 구분을 위해서 비고란 등을 활용해 해당 원재료가 간접재료임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EU 집행위원회의 'Preferential Trade Guidance Preferential Origin(2024)'에서도 간접재료 관련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프랑스산 포도로 생산된 와인의 생산 과정에서 와인의 탁도를 제거하기 위한 보조 물질인 미국산 벤토나이트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해 벤토나이트는 생산 과정의 끝에 여과돼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EU·일본 EPA 제3.13조에 따라 중립재로 간주되며, 결국 생산된 와인이 EU에서 완전 획득됐는지 결정할 때 생산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례에 관한 답변에서 호(Heading) 변경에 관계없이 화학반응을 인정하고 있는 한·미 FTA 등의 경우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화학물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다.

3) 가공공정기준

우리나라는 화학제품(제6부)이나 플라스틱, 고무 제품(제7부)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을 원산지 상품 충족 요건으로 두고 있는 협정이 존재한다.

한·미 FTA 또한 제6부 및 제7부 제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부는 규칙 1 내지 규칙 7까지, 제7부는 규칙 1 내지 규칙 5까지 규정돼 있다. 각 규칙에는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이 규정돼 있다.

그중 한·미 FTA 제6부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중 각 부에 존재하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과(주1)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 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주2)으로 나뉜다.

주	규정
주1	제6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7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주2의 내용은 주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별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결국 주1과 주2는 선택적 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에 대한 화학물품 가공공정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화학반응	정제	혼합배합	입자크기 변화	표준물질	이성체분리	분리금지
미국	제28~38류 (제3823호 적용 제외) 제39~40류	제28~38류 제39~40류	제30류 제31류 제33~38류 (제3808호 제외) 제39~40류	제30류 제31류 제33류 제39류	제28~38류	제28~38류 제39류	제28~38류

즉 해당 사례는 제28류에 관한 규정이므로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정제(Purification), 혼합배합(Mixtures and Blends), 입자크기변화(Change in Particle Size), 표준물질(Standards Materials), 이성체분리(Isomer Separation), 분리금지(Separation Prohibition) 중 혼합배합 및 입자크기변화 규정을 제외하고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중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화학반응과 정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공공정기준	관련 규정
화학반응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공공정기준	관련 규정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정제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사례에서 제시한 역내산 황화스트론튬(제2830.90호)에 역외산 탄산나트륨(제2836.20호)을 첨가해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분리·추출)된 공정을 호 변경에 관계없이 화학반응을 인정하고 있는 한·미 FTA 등의 경우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미 FTA의 가공공정기준과 관련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유사 Ruling을 살펴본다.

먼저 H304537(2020.8.5.)에서는 Fenpyroximate Technical 상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가능성이 논의됐다. Fenpyroximate Technical은 특정 농약제품의 화학원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백색 또는 유백색 결정성 고체 형태로 미국에 수입되며, 성분비는 Fenpyroximate 99.5%, 기타 성분 0.5%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건은 CBP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이 수행됐고 Form 28을 통해 검증절차가 진행됐다. 또한 CBP Form 29를 통해 검증 대상이었던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해 한·미 FTA상 특혜관세 적용을 부인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통지했다.

이의신청인은 Fenpyroximate Technical이 여러 가지 성분을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련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목록과 화학조성을 나타내는 도식, 생산 과정에서 여러 성분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생산자가 제공한 제조 기록 및 도해자료를 제출해, Fenpyroximate Technical 생산 과정에서 여러 성분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조 변화에는 분자 내 결합의 분해와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형성이 수반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은 CBP's Laboratories and Scientific Services Directorate와의 협의에 따라 화학반응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한·미 FTA 목적상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 받았다.

결국 해당 물품이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핵심 근거서류는 원재료내역, 그리고 그에 대한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들이 추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H233566(2012.12.12.)에서는 Pentaerythritol Polyethylene Glycol Ether Tetra-Thio [(PEG-Thiol)4]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가능성이 논의됐다. 신청인은 한국 내 제조공정 설명서, 배치생산 및 관리 기록, 성분분석증명서, 그리고 미국 내 최종 사용자가 (PEG-Thiol)4와 다른 화학물질을 수술용 실란트 제조에 사용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 내에서 제조하고 정제(manufactures and purifies)되는데, 제조공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PEG-Thiol)4의 전구체인 (PEG-MS)4가 형성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PEG-MS)4가 제22류, 제28류, 제29류의 제품(원재료)들과 반응해 crude인 (PEG-Thiol)4 습윤 케이크(wet cake)가 생성된다. 두 번의 정제과정에서 탈기(degassing), 세척(washing), 냉각(cooling), 교반(stirring), 여과(filtering) 등의 공정이 진행된 후 건조가 이뤄지며,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에 따르면, 결과물은 87% 순도의 건조 고체 (PEG-Thiol)4로 이뤄진다.

한·미 FTA 목적상 정제에 관한 규정은 물품의 불순물에 대한 요건 또는 용도 관련 요건이 존재한다. 제출된 정보에 따르면, (PEG-Thiol)4는 한국에서 제조·정제됐으며 미국 수입 시 87% 순도를 가지며, 미국 내에서 수술용 실란트 제조에 사용된다. 즉, 해당 물품은 불순물의 80% 이상이 제거됐고,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로 인해 의료용 등의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다.

해당 사례 또한 한·미 FTA 목적상 한국산 충족이 이뤄지도록 회신이 있었으며, 가공공정기준 중 정제를 활용한 사례로 확인된다.

이번 사례에서 제시한 한·중 FTA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세번변경기준 등 기준에 활용될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사항이 있다. 장기적으로 협정의 개정이 필요해보이나, 기업의 원산지관리 전담자 또는 관세사 등 실무자는 당장 눈앞에 있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 판정 및 관리업무를 진행할 뿐이다. 각 협정별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제시돼 있으며, 실제 원산지 규정의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베이커리류의 HS Code

냉동 완제품 피낭시에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주신 물품이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의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의 '페이스트리와 케이크'에 해당된다면 제1905.90-103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물품 분류사례에서 'financier(피낭시에)'는 프랑스의 조그만 아몬드 케이크 빵으로 작은 틀에 구워 버터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으로, 케이크 범주의 물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봐 제1905.90-1030호에 분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요건 / 제빵용 드라이이스트의 수입요건

제2102.10-3000호에 분류되는 드라이이스트의 수입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제2102.10-3000호에 분류되는 '제빵효모'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통관 / 물품가격

해외 직구 물품가격이 150.02달러인 경우 통관목록의 물품가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에서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150.02달러라면 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해 150달러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FTA / 한·EU 인증수출자 기준

유럽으로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유로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따라서, 인증수출자 및 전체가격이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 없이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증수출자번호 없이 6,000유로 미만 원산지신고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6,000유로의 판단기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시에는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필요)가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굴착기용 유압식 해머의 품목분류

김 진 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I. 개요

굴착기(excavator)¹⁾는 토사(土砂)를 굴착하는 기계를 말하며, 셔블형 굴착기, 버킷 휠 굴착기 등이 있다. 이러한 굴착기는 토질의 상태, 공사의 종류·규모, 현장의 상황, 토량(土量), 공사기간, 운송로의 상황 등에 따라 적합한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굴착용 기계에는 굴삭기·불도저·백호·그레이더·드래글라인·모터스크레이퍼·트렌처·모터그레이더·착암기·준설선 등이 있다. 이 기계들은 굴착작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퍼담는 일이나 근거리의 운반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굴착기인 불도저는 굴착뿐만 아니라 개간·제설(除雪)·정지(整地) 등 다목적으로 쓰이며, 기계의 용량도 4~5톤에서 20톤 이상, 초대형인 것은 30톤 이상의 것도 있다.²⁾

● 굴착기(excavator) ●



이러한 굴착기(excavator)에는 버킷(bucket)으로 땅을 파는 것과 함께 여러 부품(도구)이 장착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다양한 부품을 ‘어태치먼트(attachment)’라고 부른다.

다양한 어태치먼트의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³⁾

1) 굴착기(掘鑿機), 굴삭기(掘削機), 포클레인(poclaim) 등으로 불리나, 국립국어원에서는 ‘굴착기’ 사용을 권장함.

2) 굴착기[excavator, 掘鑿機](산업안전대사전, 2004.5.10., 최상복)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굴착기(excavator)에 장착되는 유압식 해머(hydraulic hammer)⁴⁾의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압식 해머의 품목분류에 대한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겠다.

II. 쟁점 사례

1. 유압식 해머(hydraulic hammer)

물품 설명	물품 이미지
○ 무게는 851kg 굴착기에 장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깨뜨리거나 부수는 용도로 사용된다.	 curshing hammer⁵⁾

3) 토척 홈페이지(torchuck-china.com/ko)

4)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압쇄기(hydraulic breaker), 유압력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분쇄하는 장치. 한면에 치즐(chisel) 날형을 밀어 누르는 타입과 2개의 암으로 양쪽에서 밀어 누르는 타입이 있다.

2. 쟁점 세번

제8430호 :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탐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제8479호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3. 의견

가. 제8430호

제84류 주 제8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그 “주된 용도(principal purpose)”에 따라 분류돼야 함.

제8430호는 ‘굴착용(excavating)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쟁점물품은 토양, 광석 또는 광물을 깨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므로 제8430호에 분류 가능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용도가 굴착용(excavating)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굴착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30호에 분류하고,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430.6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나. 제8479호

제84류 주 제8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그 ‘주된 용도(principal purpose)’에 따라 분류돼야 한다는 논지는 위와 같음.

쟁점 해머는 토양, 광석, 광물 외에 도로포장 및 기타 재료와 같은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액압식 해머에 해당함.

제8479호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쟁점물품의 주용도는 제8430호에 해당하지 않아 제847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다. 논의 결과

WCO 논의 시 쟁점물품을 특정한 사양의 해머 대신 일반적인 해머에 대해 품목분류를 검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석을 분쇄하는 데 사용되는 유압 해머는 제8430호에 분류하고, 도로 포장 및 기타 재료를 해체하는 데 사용하는 유압 해머는 제8479호로 분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논의 결과,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를 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굴착기로 봐 제8430호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수용됐다.

8430.69	1. 유압식 해머 무게는 851kg, 굴착기에 장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깨뜨리거나 부수는 용도로 사용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	--

III. 사례 해설

지금까지 유압식 해머에 관한 WCO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 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 분류 검토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쟁점물품이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 제8207호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장착돼 특정한 작업을 행하는 호환성 공구가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제8430호의 굴착기에 장착돼 ‘굴착(excavating)’이라는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작용단이 비금속으로 구성된 공구로 볼 수 있다(제82류 주 제1호 참고).

■ 제82류 주 제1호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非金屬)

아래 제8207호 해설서에 따라 쟁점 해머가 제8457호~제8465호, 제8467호, 제8479호의 기계에 장착된다면 쟁점물품을 제8207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쟁점 해머는 제8430호의 굴착기에 장착돼 사용되므로 제8207호에 분류할 수는 없다.

■ 제8207호 용어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 제8207호 해설서

이 류의 앞 호까지의 각 호에는(기계식의 톱날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 (A) 수공구(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예 :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 받침대(brace)와 다이스톡(die-stock)]
-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
- (C) 제8467호의 공구

WCO에서는 쟁점물품 논의 시, 상기 제8207호 해설서 규정으로 인해 제8207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8430호와 제8479호 분류 여부를 검토했다.

두 번째로 쟁점물품이 굴착기인지, 아니면 굴착기의 부분품인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기계’의 사전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기계란 여러 부품이 조합돼 에너지의 공급을 받으면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기계의 개념 ●

□ 기계용어 대사전

기계는 힘의 작용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거나 변형되지 않는 여러 부품이 조합되어 에너지의 공급을 받으면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성안당, 2001년 판).

□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의 어원 및 정의

기계라는 영어 ‘machine’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μηχανή]와 라틴어의 마키나[machina]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밀한 고안품과 발명품]이라는 뜻.

기계의 사전적 정의는 [인력을 직접 쓰지 아니하고 자연의 원동력을 이용하여 여러 부품이 조합되어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기계의 정의를 고정적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쟁점물품의 내부 구성요소는 통상적으로 치즐, 실린더, 피스톤, 밸브 등이다. 쟁점물품은 보통 유압펌프에서 공급되는 동력원을 이용해 본품 내부의 피스톤이 왕복운동으로 변환해 치즐로 암반 등을 파쇄하는 물품이다.

HS 품목분류상 기계는 동력원이 부착되지 않아도 에너지를 공급받아 정해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쟁점물품은 유압펌프 또는 유압모터 등 동력원이 장착되지 않았지만, 다음 규정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기계 자체로 볼 수 있다.

■ 제16부 총설

(IV) **불완전한 기계(incomplete machine)**(통칙 제2호 가목 참조)

이 부의 각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장치에는 완전한 기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flywheel)·베드 플레이트(bed plate)·캘린더롤(calender roll)·툴홀더(tool holder) 등 만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않고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식 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 제8414호 해설서

제8413호의 펌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되는 기계펌프와 압축기는 **모터나 터빈이 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may be built with integral motors or turbines)**, 후자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 사용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계 자체로서 굴착기의 부분품(제8431호)이 아니라 굴착기(제8430호)로 분류된 것이다.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분야에서 기계 완제품으로 분류한 유사한 취지의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음 사례는 기계(8430호)와 기계의 부분품(제8431호) 간 경합돼 기계(제8430호)로 결정한 사례인데, 추후 용도에 따라 제8432호로 결정됐다.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7, 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세번	제8430.69-0000호
경합 세번	제8430.69-0000호 제8431.49-9000호
변경 내역	변경 근거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33호) 변경 후 세번 : 제8432.80-0000호
품명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 R.KOREA ○ 개요
물품 설명	- 트랙터와 연결돼 토양을 굴착하거나 굴착된 토양을 이동하는 기기 - (작동 방법) 본건 물품의 유압장치를 트랙터 본체의 유압 연결장치에 연결해 트랙터의 미션오일을 이용하는 원리로 기기를 작동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의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에서 “호환성 장치(interchangeable equipment)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 기계(쟁기·씨레·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중략> … 호환성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한편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작업① 유압케이블 연결, ② 트랙터에 장착·조립을 통해 트랙터에 탈·부착되는 본건 물품은 주행부와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주행부는 업체 제시자료인 카달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기기를 밀거나 끌도록 제작된 트랙터에 해당하므로 트랙터와 본건 물품은 각각 별개의 호에 분류해야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컴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중략> …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다지기용 기계[예 : 스크레이핑·지균·정지·탬핑이나 롤링 등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바퀴를 갖추지 않아 스스로 주행할 수 없으며 Bucket을 통해 토양을 굴착하는 본건 물품은 **제8430호의 ‘그 밖의 굴착용 기계’에 해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을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30.69-0000호에 분류함.

IV. 시사점

이번 호에서 굴착기용 유압식 해머의 WCO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호환성 공구(제8207호) 해당 여부와 제84류에서 기계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언급한 유압식 해머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기능, 용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출입신고 시 적절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로즈힙 페이스트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유럽의 추운 겨울, 해가 짧아지고 감기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붉고 단단한 열매로 만든 달콤한 차를 내어준다. 바로, ‘로즈힙(Rosehip)’, 장미꽃이 진 뒤 가지 끝에 남는 작은 열매다. 눈발이 날리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붙어 떨어지지 않고 익어가는 이 열매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응축해 온 덕분에 ‘북유럽의 자연 비타민 캡슐’이라고 불리곤 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비타민C 공급이 어려워지자,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 로즈힙 시럽을 국가가 제조·보급한 기록도 있다. 로즈힙은 유럽의 민간요법을 넘어 현대식품, 음료 산업에서도 향산화, 비타민 원료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차와 잼, 기능성 식품뿐 아니라, 유기농 화장품, 건강 보조용 농축액 등 그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장미의 열매(로즈힙, rosehip)를 분쇄, 여과(씨 제거)해 곱게 펄프화한 후 살균처리한 적갈색의 걸쭉한 액상으로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에 해당하는 제2007.99-9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 :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설탕은 첨가할 수도 있고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20류의 주 제5호에서는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과일 퓨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일주스 및 과즙제조에 사용되는 과일 퓨레는 발효되지 않은 것이나 과일즙을 제거하지 않은 전체 또는 껍질을 벗긴 과일의 가식부위를 적당히 가공(예 : 체질, 뺀음질, 제분)하여 얻은 발효제품이다.

... <중략> ...

과일주스 및 과즙제조에 사용되는 농축 과일퓨레는 재구성된 주스의 brix value 보다 **최소 50% 높은 값으로 Brix level을 증가시키기 충분한 양만큼 물이 물리적으로 제거된 것이다.**

이 내용을 참조하면 퓨레는 브릭스(당의 농도를 정의하는 단위) 값이 충분히 증가할 만큼의 물이 물리적으로 제거된 것을 의미한다.

본 물품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과정이 있으나 제시된 자료, 제출된 시료의 분석 결과 및 CODEX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007호의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퓨레에 해당하는 진한 농도로 조제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2007호로 분류하지 않았다.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살구·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살균한 기타 과실의 펄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 제2008.99-900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ROSEHIP PUREE	2007.99-9000 (FTR1 0%)	Rose hip preparations	2008.99-9000 (FTR1 45%)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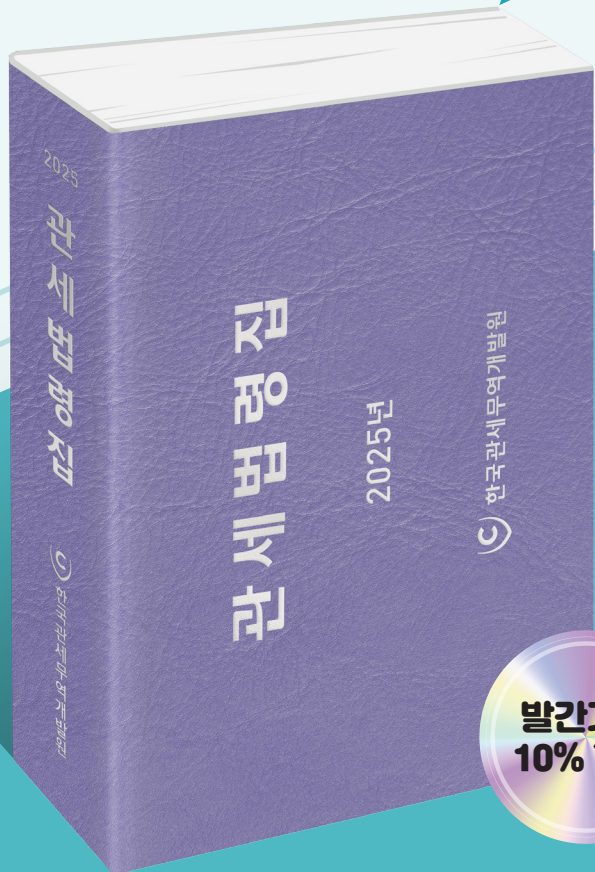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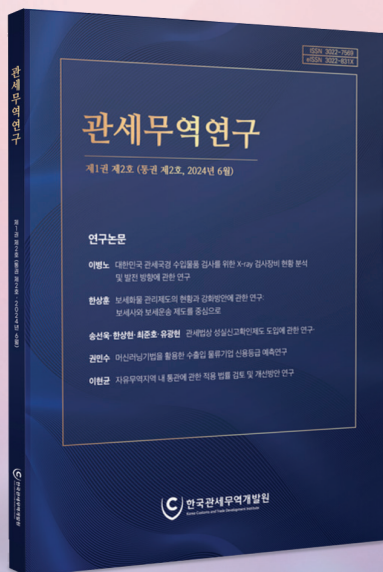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